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6. 17 선고 2018가단5141261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기술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

담당변호사 김윤석

피고1. 주식회사 A

2. B

변론 종결피고 1에 대하여 : 2022. 5. 27.

피고 2에 대하여 : 2021. 2. 5.

판결 선고2022. 6. 17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,389,867원과 그 중 173,417,377원에 대하여 2018. 6. 11.부터 2018. 7. 23.까지는 연 10%의, 그 다음날부터 2019. 5. 31.까지는 연 1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,389,867원 및 그중 173,417,377원에 대하여 2018. 6. 11.부터

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0%의,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7. 3. 15. 피고 주식회사 A(이하 '피고 회사'라고 한다)와 사이에 보증원금 : 170,000,000원, 보증기한 : 2018. 3. 15.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(이하 '이 사건 보증약정'이라고 한다)을 체결하고, 같은 날 보증번호 : C의 신용보증서(보증비율 : 85%)를 발급해 주었다.

나. 이 사건 보증약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피고 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,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(2012. 12. 1.부터 2016. 1. 31.까지는 연 12%, 2016. 2. 1. 이후는 연 10%)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 1000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(대지급금)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를 지급한다.

피고 회사가 압류·가압류·가처분을 당하거나, 폐업 내지 영업을 정지당하거나, 조세공과를 체납하거나, 당좌부도로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,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원금과 종속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에는,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별도의 통지나 최고없이 사전에 구상할 수 있다.

다. 피고 회사는 2017. 3. 16. 위 보증서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,000,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(이하 '이 사건 대출'이라고 한다)을 받았고, 원고는 피고 회사가 위 대출약정에 따라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을 하였다.

라. 피고 B은 2017. 3. 15.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.

마. 피고 회사는 자금사정의 악화로 2018. 1. 3. 국세를 체납하였고,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도 2018. 1. 31. 이후 이자 변제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8. 3. 15. 원금 변제마저 연체하였다.

바.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인으로서 2018. 6. 11. 중소기업은행에 173,417,377원(= 원금 170,000,000원 + 이자 3,417,377원)을 대위변제하였다.

사.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미수 추가보증료는 972,490원(= 170,000,000원 × 2.4% × 87일(2018. 3. 16. ~ 2018. 6. 10.) ÷ 365일, 원 이하 버림)이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7호증,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.

2. 판단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,389,867원(= 대위변제금 173,417,377원 + 미수 추가보증료 972,490원)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73,417,377원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인 2018. 6. 11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8. 7. 23.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%의,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9. 5. 31.까지는 연 1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['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 제29768호)'이 2019. 5. 21. 개정 공포되어 2019. 6. 1.부터 시행됨에 따라, 2019. 6. 1.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].

나.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증약정의 이자율이 과다하고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원고가 이자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이자율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근거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, 증거가 없고, 피고 회사의 운영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자를 면제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, 달리 원고가 이자를 면제하여 주어야 할 근거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,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이정권